

수원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77804 판결 [공사대금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담당변호사 성민섭, 이길우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3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9. 선고 2020가소12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러한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구리시 D건물, 2층 E호 F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

② 그런데 위 주소지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피고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분, 변론기일 통지서 등은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F 주식회사의 직원이 수령하였다.

④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 겸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도 같은 장소로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정본 등이 적법한 피고의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1. C로부터 판넬,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 판사 오연수